

Petition for Order for Protection – Vulnerable Adult 보호명령 신청서 – 생활장애인

(아래 법원 웹사이트에서 이문서의 영어본을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http://www.courts.wa.gov/forms/?fa=forms.contribute&formID=70>.

이 양식은 생활장애인의 보호명령 사건을 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양식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공적 법원기록으로 제출되며 민사 법원 사건을 시작하게 합니다.
- 생활장애인에게 보호를 필요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서류가 송달 (인편 송달) 됩니다.
- 만약 생활장애인을 위하여 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생활장애인에게도 서류가 송달 (인편으로 직접 송달) 됩니다.
- 해당 될 경우, 생활장애인의 후견인에게도 서류가 송달 (인편 송달) 됩니다..

이 신청서에 들어 있는 정보는 다음 사항을 결정할 경우 법원에서 사용됩니다:

- 생활장애인을 위하여 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를 결정할 때.
- 생활장애인에 대한 피신청인 [피소인]의 행위가 유기(遺棄), 학대, 재정착취 또는 태만의 법적 정의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할 때.

이 신청은 두 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양식은 즉각적인 임시 보호명령과 완전 보호명령 두 가지를 모두 요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생활장애인에게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법원이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보통 14일 이내에 전면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유효한] 임시명령을 내립니다. 피신청인과 생활장애인은 전면 청문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면 청문회에서 법원은 최대 5년까지 지속되는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당신은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송달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즉,

- 신청서
- 임시 보호명령과 청문회 통지서
- 만약 있으면, 법원에 제출할 그 외 진술서 또는 서류들

만약 당신이 생활장애인을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당신도 위와 마찬가지로 생활장애인과 만약 해당되는 당사자의 후견인이 있으면, 그 후견인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송달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 임시 명령서 및 청문회 통지서
- 만약 있으면, 법원에 제출할 그 외 진술서 또는 서류들
- 생활장애인에게 가는 통지서

[서류] 송달은 법시행기관, 고용된 서류송달 전문 회사, 또는 해당 사건과 무관한 18세 이상의 연령자가 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 또는 생활장애인에게 서류송달을 수행한 사람은 송달한 사실을 확인하는 보증서,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송달 확인서가 제출되어있지 않으면 청문회가 열릴 수 없습니다.

검은 색 또는 파란 색 잉크를 사용하여 선명하게 써 넣어 주십시오.

1 페이지:

양식의 맨 윗 부분

생활장애인의 이름을 써 넣으십시오.

생활장애인에게 보호를 필요하게 만드는 사람을 “피신청인”이라고 합니다. 피 신청인의 이름을 써 넣으십시오.

신청인에 관한 정보 (질문 1)

법원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 만약 당신이 생활장애인이면, 첫번 째 상자에 표시하십시오.
- 만약 당신이 생활장애인을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두번 째 상자에 표시하고 당신의 이름을 써 넣으십시오. 그런 다음 생활장애인과 당신의 관계가 설명된 상자에 표시하십시오.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질문 2)

법원은 피신청인과 생활장애인과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해당되는 상자 또는 상자들에 표시하십시오.

생활장애인 (질문 3)

법원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생활장애인”이라는 법적 정의에 맞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해당되는 상자 또는 상자들에 표시하십시오.

2 페이지:

거주지 (질문 4)

해당되는 상자에 표시하십시오.

당신의 송달 주소 (질문 5)

만약 당신이 생활장애인을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피신청인과 생활장애인은 이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류들을 당신에게 송달케 할 권리를 가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거주지 주소를 비밀로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면, 당신의 거주하는 곳의 주소는 아니지만 법적인 서류를 받겠다고 동의하는 수신주소를 써서 알려 주어야 합니다.

보호를 받게 될 사람과의 관계 (질문 6)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 [DSHS]의 고용인으로서 신청할 경우, 질문 7로 넘어 가십시오.

만약 당신이 생활장애인을 위하여 신청할 경우, 해당되는 상자에 표시하고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후견인 또는 법적 수탁인 (受託人) (질문 7)

법원은 생활장애인의 후견인이거나 법적 수탁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과거의 법원 사건들 (질문 8)

이 사건이 생활장애인과 피신청인이 관련된 첫 번째 법절차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건이나 금지, 보호 또는 접촉금지 명령을 받은 일이 있으면 법원은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법원에서 내린 명령과 서로 엇갈릴지 모르는 명령을 내리지 않게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 또는 다른 제지, 보호 및 접촉금지 명령들이 있으면, 그런 사건의 이름 (State v. Jones [주 대 존스], Adams v. Smith [애담스 대 스미드], In re the Guardianship of Smith [스미드의 후견인에 관한 사건 등과 같은])과 사건번호 (만약 알고 있으면) 및 법원 (지방, 시 또는 고등법원 등) 그리고 주어진 난에 카운티와 주의 이름을 열거해야 합니다.

3 페이지:

보호의 요청

이 것은 생활장애인에게 필요할지도 모르는 여러 보호 항목들인데 그 종류가 각각 다릅니다.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려면, 생활장애인이 필요로 할 것같은 각 보호 항목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상자에 표시하십시오.

- 법원은 임시 또는 완전 명령을 통하여 귀하가 요청한 구제조치들을 모두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임시명령을 내리기 전에 당신에게 보증금을 예치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VAi-2.015 임시 보호명령 및 청문회 통지서를 참고 할 것)
1. 첫번째 항목은 피신청인이 생활장애인에게 성폭력을 포함하는 신체적인 위해, 신체적인 상해 폭력행위 또한 생활장애인에게 희롱, 방해 또는 스토킹 행위를 하지 못하게 제지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2. 두번째 항목은 생활장애인에게 유기, 학대, 착취, 태만 또는 재정적 착취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하지 못하게 제지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3. 세번째 항목은 생활장애인의 거주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4. 네번째 항목은 피신청인이 본인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화, 우편 또는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생활장애인에게 가까이 가거나 또는 접촉하지 못하게 제지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하거나 법원의 서류를 제 3자가 우송하거나 송달할 경우는 제외됩니다.
 5. 다섯번째 항목은 피신청인이 생활장애인의 집, 직장, 성인 데이케어 프로그램 또는 생활장애인이 거주하는 장기 보호시설에서 어떤 특정 거리(예, 100 피트, 2블럭 등) 안으로 알면서 들어 오거나 그 거리 안에 알면서 머무르지 못하게 금지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6. 여섯번째 항목은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생활장애인의 수입 또는 그 외 재원을 처리한 내역에 대한 계산서를 제공할 책임을 지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7. 일곱번째 항목은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최대 90일 동안 생활장애인의 재산을 이전하지 못하게 제지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8. 여덟번째 항목은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최대 90일 동안 피신청인의 재산을 이전하지 못하게 금지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9. 아홉번째 항목은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료를 포함하는 신청서 접수비, 법정 비용 및 변호사비를 포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들어간 비용의 지불을 책임지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10. “기타.” 당신이 법원에서 고려해 주기를 원하는 그 외의 요청 사항들을 열거하십시오.

4 페이지:

법시행기관에게서 받고자 하는 특별 협조 요청

당신은 경찰의 특별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받기를 원하는 도움이 무엇인지 법원에 설명하십시오.

예: 당신은 생활장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출입하는 데 경찰이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까?

5 및 6 페이지:

신청인의 진술

신청인이 진술하는 목적은 왜 보호명령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법원에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법원에 제출됩니다. 이것은 공적인 기록입니다. 또한 이 문서는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만약 생활장애인이 신청인이 아닐 경우에는 생활장애인에게도 송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진술서에 생활장애인이 유기(遺棄), 성폭행, 신체적 학대, 착취, 태만 및/또는 재정적 착취 등을 당한 특정 사건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법원의 청문회에서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생활장애인에 대한 유기, 성폭행, 신체적 학대, 착취, 태만 및 재정착취 등이 무슨 뜻을 가진 말인지를 읽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진술서를 쓰시기 시작 하기 전에 설명을 모두 읽으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일러주는 도움말들이 있습니다.

생활장애인에게 일어났던 일을 정확하게 묘사하십시오. 날짜와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쓰면 쓸수록 판사가 이해하는 데 그만큼 더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주십시오. 만약 긴급상황이 존재하면, 그런 긴급상황을 설명하여 법원이 청문회를 갖기 전에 즉각적으로 임시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십시오. 진술서 작성에 요구되는 정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피신청인이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했는지.
- 피신청인이 체포되었는지.
- 체포된 사람이 없더라도 경찰이 관여했는지.
- 만약 생활장애인이 스토킹을 당했을 경우, 감시를 통해서 어떤 행동방식을 발견했는지 설명하십시오.

예:

“일요일 테리가 [생활장애인을] 폭행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1월12일 일요일 오전 2시에 테리가 [생활장애인의] 뺨을 때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테리가 [생활장애인의] 돈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보다 “테리가 [생활장애인의] 집세 낼 돈을 훔쳐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테리가 [생활장애인을] 위협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테리가 [생활장애인에게] ‘당신이 집과 돈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당신을 돌봐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피신청인이 말한 그대로 정확히 쓰도록 하십시오.

만약 요청한 정보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란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쓰십시오.

임시 구제조치의 통고

긴급상황이 없는 한, 당신은 당신이 [임시 구제조치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임시 명령을 받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서는 피신청인, 생활장애인 및 생활장애인의 후견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적어도 당신이 판사에게 임시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려는 날짜, 시간 및 장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긴급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믿거나 당신이 사전 서면 통지서를 줄 수 없을 경우, 당신은 진술서에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왜 즉각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상해, 손실 또는 피해가 생활장애인에게 발생할 것인가.
- 왜 피신청인과 생활장애인에게 통지서가 송달될 수 없는가.
- 송달하려고 노력했던 사실 및
- 사전 통지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정하면 안되는 이유들.

주의 (州外) 송달

만약 당신이 생활장애인을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워싱턴 주 내에서 피신청인 또는 생활장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으면 해당 상자에 표시하십시오. 유의사항: 만약 당신이 생활장애인을 위하여 제출할 경우, 법원에서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 또는 생활장애인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할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양식에 서명하십시오

당신의 진술이 끝났으면, 날짜 난에 오늘 날짜를 써 넣고 이 양식이 작성된 도시의 이름을 써 넣으십시오. 양식에 서명하십시오.

다음은 보호명령 신청서 – 생활장애인의 본보기입니다

Notice: You must complete this form in English.

유의사항: 이 양식은 영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Superior Court of Washington
For _____ County
(워싱턴 주 _____ 카운티 고등법원)

In re the Matter of:
(아래에 관한 사건:)

_____ a Vulnerable Adult (Person to be Protected)
(생활장애인 (보호 받아야 할 사람))

_____ Respondent (Person to be Restrained)
(피신청인 (제지 되어야 할 사람))

No. _____
(사건번호:)

**Petition for Vulnerable Adult Order
for Protection
(PTORVA)**

(생활장인을 위한
보호명령 신청서)

1. Identification of Petitioner (신청인의 신원):

My name is (please print)
(나의 이름은)

- _____.
- I am a vulnerable adult filing on my own behalf.
(나는 생활장애인이며 내가 직접신청합니다.)
- I am filing on behalf of a vulnerable adult, and
(select one of the options below):
(나는 생활장애인을 위하여 신청하며, 또한
(아래 선택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 I am the vulnerable adult's guardian or legal
fiduciary.
(나는 생활장애인의 후견인 또는 법적 수탁인
입니다.)
- I am an interested person.
(나는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2. Respondent's relationship to the
vulnerable adult is (check all that apply):**

(피신청인과 생활장인의 관계 (해당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Spouse or former spouse.
(배우자 또는 전배우자.)
- Parent of a common child.
(공동자녀의 부모.)
- Current or former cohabitant as intimate
partner.
(성관계의 파트너 현 또는 전 동거인.)
- Other Family Member (describe):
(그 외 가족 (설명하십시오).)
_____.
- Care Provider.
(돌보아 주는 사람 또는 기관.)

<input type="checkbox"/> DSHS petitions on behalf of the vulnerable adult who: (사회보건부가 다음 사유로 생활장애인을 위하여 신청합니다.) <input type="checkbox"/> Has consented to this petition. (이신청에 동의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Lacks the capacity or ability to consent to this petition. (이 신청에 동의할 능력이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Guardian. (후견인.) <input type="checkbox"/> Trustee. (피신탁인.) <input type="checkbox"/> Payee. (피지불인.) <input type="checkbox"/> Power of Attorney. ([위임장에 의한] 대리권자.) <input type="checkbox"/> Other (기타): _____
---	--

3. The vulnerable adult (check all that apply):
 (생활장애인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Is over 60 years old and does not have the functional, mental, or physical ability to care for himself or herself. (60세 이상이며 자신을 보호할 기능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이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Was found incapacitated under chapter 11.88 RCW. (RCW 11.88장에 따라 무능력자로 판정 되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Has a developmental disability as defined in RCW 71A.10.020. (RCW 71A.10.020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입니다.)	<input type="checkbox"/> Is receiving services from a compensated personal aide who provides at-home care for the vulnerable adult at his or her direction. (생활장애인의 지시하에 집에서 돌보아 주는 유급 개인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Is receiving services from a home health, hospice, or home care agency licensed or required to be licensed. (면허가 있거나 면허가 요구되는 가정건강관리, 임종간호, 또는 가정간병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Is receiving in-home services from an individual provider under contract with DSHS (사회보건부와 계약하에 있는 개인 도우미 제공자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Has been admitted to a boarding home, nursing home, adult family home, soldiers' home, residential habilitation center or any other facility licensed by DSHS. (하숙집, 양노원, 성인가정, 군인가정, 거주재활 센터 또는 사회보건부의 면허를 받은 그 외 시설에 들어와 있습니다.)
--	---	--

4. The vulnerable adult lives in this county. **Or** This is the county of the vulnerable adult's new or former residence and he or she left or was removed from his or her previous residence as a result of, or to prevent, abandonment, abuse, financial exploitation or neglect.
 (생활장애인이 카운티에 거주합니다. 또는 [-] 이곳은 생활장애인의 새 거주지 또는 전 거주지이며 생활장애인이 유기, 학대, 재정착취 또는 등한시되었던 결과로 또는 그런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 거주지에서 나왔거나 내보내졌습니다.)

5. My address for receiving legal documents is: _____
 _____ (If you wish to keep your residential address **confidential**, you may list an alternate address.)

(법률서류를 받는 나의 주소는: [____]. (만약 당신이 당신의 거주지 주소를 비밀로 하고 싶으면, 다른 주소를 써넣어도 됩니다.))

6. My relationship to the vulnerable adult and authority to act:

(If you are filing on your own behalf, or if you are filing as DSHS, go to paragraph 7.)

(생활장애인에 대한 나의 관계 및 나의 대행권은:

(만약 당신이 자신을 위하여 신청하거나, 당신이 사회보장부의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7 번 항으로 넘어 가십시오.))

I am the vulnerable adult’s guardian. I was appointed in _____ County, State of _____, Cause No: _____ on or about _____ (date). (Attach a copy of your letters or order appointing guardian, if available.)

(나는 생활장애인의 후견인입니다. 나는 [___] 카운티 [___] 주에서 사건번호 제 [___]호에 의하여 [___] (날짜)일 또는 일경에 선임되었습니다. (만약 제출할 수 있으면, 당신을 후견인으로 임명한 서신 또는 법원명령서를 첨부하십시오.)

I am the vulnerable adult’s legal fiduciary. I was appointed trustee power of attorney on or about _____ (date). (Attach a copy of your relevant documents, if available.)

(나는 생활장애인의 법적 수탁인입니다. 나는 [___] (날짜) 일 또는 일경에 [-] 수탁인 [-]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만약 제출할 수 있으면, 관련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I am interested in the welfare of the vulnerable adult. I have a good faith belief that the court’s intervention is necessary and that the vulnerable adult is unable at this time to protect his or her own interests, due to incapacity, undue influence, or duress.

(나는 생활장애인의 복지에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며 현재 생활장애인은 자신의 무능력, 부당한 영향력 또는 강박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Describe the length and nature of your relationship to the vulnerable adult:

(당신과 생활장애인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어떤 성격을 띤 것인지 설명하십시오):

Describe the incapacity, undue influence, or duress that makes the vulnerable adult unable to protect his or her own interests:

(생활장애인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력, 부당한 영향력 또는 강박이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7. Do you know of any person who is or claims to be the guardian or legal fiduciary (such as, trustee, payee, power of attorney) of the vulnerable adult? no yes. Provide name and address:

(당신은 (피신탁인, 피지불인,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등과 같은) 후견인 또는 법적 수탁인이거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 모릅니다 [-] 압니다. 알면, 이름과 주소를 써 넣어 주십시오.)

8. Other court cases or other restraining, protection or no-contact orders involving the petitioner, the vulnerable adult or the respondent:

(신청인, 생활장애인 또는 피신청인이 관련된 다른 법원 사건들 또는 행동억제, 보호 또는 접촉금지 명령들이 있으면 써 넣어 주십시오.)

Case Name (사건의 이름)	Case Number (사건번호)	Court/County (법원이름/카운티)

I Request a Vulnerable Adult Protection Order that will grant the relief requested below:

요청한 구제조치를 승낙하는 **생활장애인 보호명령**을 아래와 같이 내려 주시기를 청구합니다.

1. **Restrain** the respondent from committing or threatening to commit physical harm, bodily injury, assault, including sexual assault, against the vulnerable adult and from molesting, harassing, or stalking the vulnerable adult.

(피신청인이 생활장애인에게 성폭력을 포함하는 신체적 위해, 신체적 상해, 폭력행위, 또한 생활장애인에게 희롱, 방해 또는 스토킹 행위를 하지 못하게 제지시켜 주십시오.)

(If the court orders this relief after a hearing, and the respondent is the vulnerable adult's spouse or former spouse, the parent of a common child, a current or former cohabitant as intimate partner, the respondent will be prohibited from possessing a firearm or ammunition under federal law for the duration of this order. An exception exists for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military personnel when carrying department/government-issued firearms. 18 U.S.C. § 925(a)(1).)

(만약 청문회를 가진 후 법원이 이 구제조치를 명령할 경우, 또한 피신청인이 생활장애인의 배우자, 전배우자, 공동자녀의 부모, 또는 성관계의 파트너로 현재 또는 과거의 동거자일 경우, 피신청인은 이 명령의 유효기간 동안 연방법에 따라 화기나 탄약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관계부서나 정부가 발급한 화기를 휴대하고 있는 법시행관이나 군인일 경우는 이 법에서 제외됩니다. [연방법] 18 U.S.A. §925(a)(1).)

2. **Restrain** the respondent from committing or threatening to commit acts of abandonment, abuse, exploitation, neglect, or financial exploitation against the vulnerable adult.

(피신청인이 생활장애인을 유기, 학대, 착취, 방치 또는 재정적 착취 등의 행위를 범하거나 또는 그렇게 위협하는 행위를 범하지 못하게 제지시켜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3. Exclude the respondent from the vulnerable adult's residence. (생활장애인의 거주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시켜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4. Restrain the respondent from coming near and from having any contact with the vulnerable adult, in person or through others, by phone, mail, or any means, directly or indirectly, except through an attorney, or mailing or delivery by a third party of court documents. (변호사를 통하거나 법원의 서류를 제3자가 우송하거나 송달할 경우를 제외하고, 피신청인 본인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화, 우편 또는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생활장애인에게 가까이 가거나 또는 접촉하지 못하게 제지시켜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5. Prohibit the respondent from knowingly coming within, or knowingly remaining within _____ (distance) of the vulnerable adult's <input type="checkbox"/> residence <input type="checkbox"/> workplace <input type="checkbox"/> adult day program; <input type="checkbox"/> the premises of the long-term care facility where the vulnerable adult resides. (피신청인이 생활장애인의 [-] 집 [-] 직장 [-] 성인 데이케어 프로그램 또는 [-] 생활장애인이 거주하는 장기 보호시설에서 [___] (거리 표시) 안으로 알면서 들어 오거나 그 거리 안에서 알면서 머무르지 못하게 제지시켜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other (기타):
<input type="checkbox"/> 6. Require the respondent to provide an accounting of the disposition of the vulnerable adult's income or other resources. (피신청인에게 생활장애인의 수입 또는 그 외 재원을 처리한 내역을 계산해 줄 책임을 지워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7. Restrain the respondent from transferring the vulnerable adult's property for up to 90 Days. (피신청인에게 최대 90일 동안 생활장애인의 재산을 이전하지 못하게 제지시켜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8. Restrain the respondent from transferring respondent's property for up to 90 Days. (피신청인에게 최대 90일 동안 피신청인의 재산을 이전하지 못하게 제지시켜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9. Require the respondent to pay a filing fee, the court costs, including service fees, and costs incurred in bringing this action, including attorney's fees. (피신청인에게 송달료를 포함하는 신청서 접수비, 법정비용 및 변호사비를 포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들러간 비용을 지불하도록 책임을 지워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10. Other (기타):

Request for a Temporary Vulnerable Adult Protection Order: *An Emergency Exists* as described in the statement below. The vulnerable adult needs a temporary protection order issued immediately, without prior notice to the respondent, that grants the relief requested above.

(생활장애인 임시 보호명령 요청: 아래 진술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긴급상황이 존재합니다. 생활장애인에게 즉각적인 임시 보호명령이 필요함으로 피신청인에게 사전통고 없이 위의 요청내용대로 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Request for Special Assistance From Law Enforcement Agencies:

(법시행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별 협조를 요청합니다:)

I request the court order the appropriate law enforcement agency to assist the vulnerable adult in obtaining:

(나는 법원이 해당 법시행기관에게 생활장애인이 다음 사항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라는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합니다.)

A **Vulnerable Adult protection order** is available to protect a vulnerable adult from abandonment, abuse, financial exploitation or neglect.

(생활장애인 보호명령은 생활장애인을 유기, 학대, 재정착취 또는 방치 [보호태만] 행위에서 보호 받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bandonment" means action or inaction by a person or entity with a duty of care for a vulnerable adult that leaves the vulnerable person without the means or ability to obtain necessary food, clothing, shelter, or health care.

(“유기(遺棄)”란 생활장애인을 돌볼 임무를 가진 개인 또는 기관이 생활장애인이 필요한 음식, 옷, 거처 및 건강보호를 받을 수단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또는 행위의 결여를 뜻한다.)

"Abuse" means the willful action or inaction that inflicts injury, unreasonable confinement, intimidation, or punishment on a vulnerable adult. In instances of abuse of a vulnerable adult who is unable to express or demonstrate physical harm, pain, or mental anguish, the abuse is presumed to cause physical harm, pain, or mental anguish. Abuse includes sexual abuse, mental abuse, physical abuse, and exploitation of a vulnerable adult, which have the following meanings:

(“학대”란 생활장애인을 다치게 하거나, 무리하게 가두거나, 협박하거나 또는 벌을 주는 고의적인 행위 또는 행위의 결여를 뜻한다. 자신의 뜻을 표현하거나 신체적 위해, 고통 또는 정신적 괴로움을 표현할 수 없는 생활장애인을 학대할 경우, 그런 학대는 신체적 위해, 고통 또는 정신적 괴로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는 생활장애인에 대한 성적 학대, 정신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및 착취를 포함한다. 그런 학대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닌다.)

(a) **"Sexual abuse"** means any form of nonconsensual sexual conta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unwanted or inappropriate touching, rape, sodomy, sexual coercion, sexually explicit photographing, and sexual harassment. Sexual abuse includes any sexual contact between a staff person, who is not also a resident or client, of a facility or a staff person of a program authorized under chapter [71A.12 RCW](#), and a

vulnerable adult living in that facility or receiving service from a program authorized under chapter [71A.12](#) RCW, whether or not it is consensual.

((㉔) “**성적 학대**”란 원하지 않는 또는 부적절한 만짐, 강간, 소도미 [항문성교], 성적 강압, 성을 노골적으로 들어내는 사진촬영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동의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말하는 데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해당된다. 성적 학대는 어떤 시설의 거주자나 고객이 아닌 사람으로서 직원 또는 RCW [워싱턴주 수정법 전] 71A1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직원과 그 시설에서 살고 있거나 RCW71A1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된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받는 생활장애인 간의 성적 접촉을 포함하는 데, 그 접촉이 합의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해당된다.)

(b) "**Physical abuse**" means the willful action of inflicting bodily injury or physical mistreatment. Physical abus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striking with or without an object, slapping, pinching, choking, kicking, shoving, prodding, or the use of chemical restraints or physical restraints unless the restraints are consistent with licensing requirements, and includes restraints that are otherwise being used inappropriately.

((㉕) “**신체적 학대**”란 신체적 상해 또는 신체적 혹사를 가하는 고의적인 행위를 뜻한다. 신체적 학대는 최소한 어떤 물체를 가지고 또는 가지지 않고 치거나 뺨을 때리거나, 꼬집거나,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차거나, 밀어부치거나, 찌르거나 또는 화학물질에 의한 억제 또는 신체적 억제 등을 포함하는 육체적 학대등을 포함하지만 그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억제는 면허요건을 지키지 않는 행위이며 달리 말해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억제행위를 포함한다.)

(c) "**Mental abuse**" means any willful action or inaction of mental or verbal abuse. Mental abus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coercion, harassment, inappropriately isolating a vulnerable adult from family, friends, or regular activity, and verbal assault that includes ridiculing, intimidating, yelling, or swearing.

((㉖) “**정신적 학대**”란 정신적으로 또는 말로 하는 고의적인 행위 또는 행위의 결여를 뜻하며, 적어도 강압, 희롱, 생활장애인을 부당하게 가족, 친구 또는 정규적인 활동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조롱하거나, 고함치거나 또는 욕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그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

(d) "**Exploitation**" means an act of forcing, compelling, or exerting undue influence over a vulnerable adult causing the vulnerable adult to act in a way that is inconsistent with relevant past behavior, or causing the vulnerable adult to perform services for the benefit of another.

((㉗) “**착취**”란 생활장애인에게 강제적으로, 어쩔수 없게하게 만들거나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문제되는 행동을 과거에 한 것과 모순되게 하게 하거나 생활장애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Financial exploitation**" means the illegal or improper use of the property, income, resources, or trust funds of the vulnerable adult by any person for any person's profit or advantage.

((㉘) “**재정적 착취**”란 다른 사람이 생활장애인의 재산, 수입, 자원 또는 신탁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Neglect**" means (a) a pattern of conduct or inaction by a person or entity with a duty of care that fails to provide the goods and services that maintain physical or mental health of a vulnerable adult, or that fails to avoid or prevent physical or mental harm or pain to a vulnerable adult; or (b) an act or omission that demonstrates a serious disregard of consequences of such a magnitude as to constitute a clear and present danger to the vulnerable adult's health, welfare, or safe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nduct prohibited under RCW [9A.42.100](#).

((㉙) “**보호태만**”이란 (㉔) 돌봐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나 기관이 생활장애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거나 생활장애인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

Efforts to give notice: Did you make efforts to give notice of your request for temporary relief to respondent vulnerable adult? If so, describe how and when notice was given. If no notice was given, explain why not:

(통지서 전달 노력: 당신은 당신이 임시 구제조치를 신청한다는 통지를 [-] 피신청인 [-] 생활장애인에게 해주었습니까? 만약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또한 언제 했는지 쓰십시오. 만약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Other:

(기타):

(Continue on separate page if necessary)

(더 많은 여백이 필요하면 별지에 계속하십시오.)

Personal service cannot be made upon Respondent within the state of Washington.

(워싱턴 주 내에서 피신청인에게 인편 송달을 할 수 없음.)

You could be required to post a bond or provide alternate security as a condition for obtaining a temporary order. The court may waive the bond in situations in which the vulnerable adult's health or life would be jeopardized. RCW 7.40.080, 74.34.120(5)(a).

(당신은 임시명령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공탁금이나 또는 그 대신 보증금을 설정하라고 법원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장애인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 보증금 설정을 면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RCW 7.40.080, 74.34.120(5)(a).)

I certify under penalty of perjury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Washington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correct.

(나는 워싱턴 주 위증처벌법에 따라 위의 진술이 사실이며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Dated _____ at _____, Washington.
(날짜) (장소) (워싱턴 주.)

Signature of Petitioner
(신청인의 서명)

Print Name
(신청인의 이름을 활자로 쓰십시오)